편저자 : 송 광 호

※ 경비협회 조문 변경으로 인해 수정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	변경 전		변경 후	
p.80	협회	경비협회 (1)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. (2) "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"의 규정은 삭제됨. (3)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. (4)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함. (5) 경비협회의 업무 ① 경비업무의 연구 ② 경비원 교육 · 훈련 및 그 연구 ③ 경비원의 후생 · 복지에 관한 사항 ④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(6) 경비협회에 관하여 『경비업법』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. (7)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. (8)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함. →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. → 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의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. (9)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금,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.	협회	경비협회 (1)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. (2) "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"의 규정은 삭제됨. (3)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. (4)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함. (5) 경비협회의 업무 ① 경비업무의 연구 ② 경비원 교육 · 훈련 및 그 연구 ③ 경비원의 후생 · 복지에 관한 사항 ④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(6) 경비협회에 관하여 『경비업법』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. (7) 경비협회는 다음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. ①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②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, 계약보증(이행보증을 포함한다),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③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④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· 훈련에 관한 사업 (8)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함. (9)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금,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. (10)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. (11)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. (12)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. (13)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. (14)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.